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제출자

- 성 명 : 김은하
- 연락처 : 010-9963-2889

2. 의견내용

공고(안)	수정(안)	수정사유																								
<p>p.10 (4) 용역수행성과</p>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105 719 810 836"> <tr> <td>용역평가 결과</td> <td>95점 이상</td> <td>95점 미만 92점 이상</td> <td>92점 미만 89점 이상</td> <td>89점 이상 86점 미만</td> <td>86점 미만</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able> <p>*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p>-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p>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p>용역수행성과</p>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833 719 1538 836"> <tr> <td>용역평가 결과</td> <td>92점 이상</td> <td>92점 미만 89점 이상</td> <td>89점 미만 86점 이상</td> <td>86점 이상 83점 미만</td> <td>83점 미만</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able> <p>*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p>-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p>	용역평가 결과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이상 83점 미만	83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p>-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기준표 신설에 동의합니다.</p> <p>- 단,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기준 과 [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기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하여 절대평가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또한, 용역평가 자료 축적이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95점 만점 기준을 92점으로 한단계 조정하여 좀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용역평가 결과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이상 83점 미만	83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p>p.29 (2)용역수행성과</p>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p> <p>*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